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조항 마련 등〉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4호)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75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8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법한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5
2) 명령 발령자의 의무	10
3)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12
4) 헌법 및 군법 준수의무 및 교육 실시	15
※ 참고자료: 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20

I. 제안경위

1. 위성곤의원안

가.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3.

2. 박선원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8.

3. 권향엽의원안

가.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2.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위성곤의원안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2. 박선원의원안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3. 권향엽의원안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Ⅲ. 검토의견

1. 위법한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안 제25조)

☐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박선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등) ① ----- -----적법한 직무상----- -----.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 ----- ----- -----다만,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적법한 상관의 직	

<신 설>	<u>무상 명령에 반하</u> <u>는 경우</u> <u>3. 자신의 권한 밖의</u> <u>사항에 관하여 명</u> <u>령을 발하는 경우</u> <u>③ 군인은 제2항에</u> <u>따라 상관의 직무상</u> <u>명령에 복종하지 아</u> <u>니하는 경우 대통령</u> <u>령이 정하는 바에 따</u> <u>라 복종 거부 사유</u> <u>및 증거 등을 제시하</u> <u>여야 한다.</u>	
--------------------	---	--

□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¹⁾하고 있으나, 명령이 위헌·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위법성 또는 정당성을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군 동원,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위법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나8) 중 일부 발췌·정리 2024.12.3.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이미 현행법에서는 상관이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²⁾하고 있고, 「군형법」에서도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 시 처벌하도록 규정³⁾하는 바,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 특성상 위법한 명령⁵⁾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병이 상관의 명령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판단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군의 윤리성과 책임 있는 명령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각 호 생략)

4) 대법원도 항명죄에서의 ‘정당한 명령이란 적법한 명령임을 전제’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

5)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임 (2024헌나8)

체제 확립을 위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법·부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명자가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명령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이 있는 경찰, 검찰, 국정원 등과 다르게 전시·사변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군 임무의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중요한데, 수명자가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휘계통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

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한편, 2025년 11월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명령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정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조항을 명시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음⁶⁾.

이와 같은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명령 복종 의무 조항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 및 타 공무원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수명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자체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6)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11.25.

2. 명령 발령자의 의무(안 제24조)

- 개정안 제24조는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되고, 적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임(박선원의원안 제24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박선원의원안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u><신 설></u>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u>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u> <u>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u> <u>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② ~ ④ (생략)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u>군</u> <u>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명</u> <u>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 <u>적법한 상관</u> ----- ----- -----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와 같음)

- 개정안 제24조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로 이루어진 군의 명령 구조 내에서 명령 발령 단계에서부터 헌법 준수 및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위법·부당한 명령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24조 및 제36조에서도 이미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금지하고 있는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명령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 규정의 해석상 이미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이에 박선원의원안 제24조제1항은 현행 규정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해당 입법 취지는 이미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중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박선원의원안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방부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 발령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안 제27조)

- 개정안 제27조는 군기문란 행위에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안 제2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박선원의원안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1. ~ 3. (생략) <u><신 설></u> 4. (생략)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 -----. 1. <u>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u>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u> 6. (현행 제4호와 같음)

- 개정안 제27조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군기문란 행위 등에 추가하려는 입법 취지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내용은 이미 동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및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⁷⁾에 기 규정

된 내용이며,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각각 형사처벌의 대상⁸⁾이 되고, 아울러 두 행위 모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로도 제재⁹⁾되고 있음.

□ 군기문란의 경우 통상 「형법」, 「군형법」상 범죄행위에 비해 그 비위의 수위가 낮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바,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별도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9)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각호 생략)

【별표 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징계사유		기 준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영내 폭행·가혹행위	간부		파면~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병		강등	군기교육~휴가단축	휴가단축~견책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목인·방조행위	간부	지휘관(자)	해임~정직	감봉	근신~견책	
		기타	정직	감봉~근신	견책	
	병	분대장	강등	군기교육~휴가단축	근신~견책	
		기타	군기교육	감봉~휴가단축	근신~견책	

히려 해당 행위의 법적 평가를 범죄가 아닌 군기문란 정도로 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방부는 폭력·학대·억압 등의 행위는 「형법」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군형법」에서의 항명죄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추가적인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헌법 및 군법 준수 의무 및 교육 실시(안 제38조)

□ 개정안들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위성곤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신설>		제38조(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헌법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교육과 헌법과 이 법에서-----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	③ ----- ----- -----	④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헌법교육,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이하 “헌법교육등”이라 한다)-----
-----.

--헌법교육등-----
-----.

1. ~ 4. (현행과 같음)

④ -----
-----헌법교육등-----
-----.

⑤ 국방부장관은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1. ~ 4. (현행과 같음)

⑤ -----
-----헌법교육·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 년도 <u>기본권교육</u> 및 <u>성인지교육등</u>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 ----- ----- <u>헌법교육등</u> ----- ----- -----.	⑥ ----- ----- ----- ----- <u>헌법교육 · 기본 권교육 및 성인지교 육등</u> ----- -----.
⑥ 국방부장관은 2년 마다 각 군의 <u>기본권 교육</u> 및 <u>성인지교육</u> <u>등의</u> 효과를 점검하 고 개선방안을 검토 · 마련하여 다음 교 육에 반영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 ----- <u>헌법 교육등</u> ----- ----- ----- ----- -----.	⑦ ----- ----- <u>헌법 교육 ·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u> ----- ----- ----- ----- -----.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 외에 <u>기본권교 육</u> 및 <u>성인지교육등</u> 의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u>제7항</u> ----- <u>헌법교육등</u> ----- ----- -----.	⑧ ----- ----- <u>헌법교육 · 기본권교육 및 성인 지교육등</u> ----- ----- -----.

☐ 현행법에는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 실시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
한 조항은 없음.

□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의 법령 이해도 및 헌법 인식은 작전 수행의 적법성 확보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헌법교육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들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서 전쟁법 교육(제34조¹⁰⁾), 다문화 교육(제37조¹¹⁾), 기본권 및 성인지교육(제38조¹²⁾) 등 군인이 숙지해야 하는 여러 교육을 이미 법에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 헌법교육을 추가하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12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들¹³⁾이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병합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적인 검토안¹⁴⁾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해당 안건들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

13)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9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07호),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4호),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84호),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47호),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7호),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1호),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44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2호),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0호),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4호),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72호)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02.19) 및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참조

14) 해당 검토안은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u>군인은 제1항의 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③ <u>군인은 제1항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u> ④ <u>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유로 인 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u> ※ 타국 사례 * (영국)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할 의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군사법 매뉴얼 상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여 수명자가 거부 의무가 있음을 설명 * (독일) 별도의 거부 조항은 없으나, 복종 의무 규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 (프랑스) 「국방법전」 4122-3조, ‘군인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나 ~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프랑스는 거부 의사 제도를 시행 중이며, 관련 내용을 장관 지침으로 규정(제7조, ‘하급자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해서는 안 되며, 거부해야 한다’)	•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거부조항 신설 • 거부조항 신설을 제안한 의원 * 김현정, 이연희, 용혜인, 민형배, 안규백, 박선원 ※ 백선희 의원은 이의제기 규정 신설을 제안 •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이의제기, 명백히 위법하면 거부라는 단계적 구조로 규정 * 경찰법, 검찰청법, 국정원법, 국군방첩사령부령 등의 이의제기 규정 참고

2)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 (문구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④ (생략)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u>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u> ② <u>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1항은 ‘법적 의무’에 관한 규정, 2항은 ‘직무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리 • 프랑스 「국방법전」 4122-2조(상급자의 준수사항) * 법률,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범 및 현행 국제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명령할 수는 없다. • 독일 「군인법」 제10조(상관의 의무) * “상관은 오로지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국제법규, 법률 및 직무규정의 준수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홍기원 의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명령 발령’ 의무 조항 신설을 제안 ※ 미국, 영국은 상관은 위법한 명령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상관의 책무) ①·②·③ (생략)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①·②·③ (생략) ④ 상관은 <u>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u> ,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명령 발령자’와 ‘상관’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36조에 별도로 규정 필요

3) 헌법 수호 의무 명시 (문구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u>헌법과</u>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 국군의 강령, 충성의 의무에 ‘헌법 수호’를 명시 • 미국의 경우 장교들의 임관 사령 선서에서 “미합중국 헌법을 지키고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에서는 군을 국가의 근본 가치를 수호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인의 충성이 특정 권력자가 아닌 헌법수호에 있음을 명시 • 헌법 수호 의무를 국군의 강령, 충성의 의무 등에 규정할 것을 제안한 의원은 없었으나, 법체계 상 관련 부분 전반에 헌법 수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헌법 준수 의무를 제안한 의원(*홍기원, 백선희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u>및 헌법수호</u> 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4) 헌법교육 조항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u>제20조의2(헌법과 법령 준수 의 의무) ①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u>②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 제20조(충성의 의무)에 ‘헌법수호 의무’를 추가하면서 헌법교육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 * 백선희 의원도 제20조의2(헌법 준수의 의무)로 제안 * 홍기원 의원은 제34조의2(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로 제안 • 1항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규정 참고 *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헌법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위해 ‘필수 과목 지정’, ‘헌법 시험 실시’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토 후 대통령령 또는 훈령으로 규정